

제 35 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2호

국회사무처

단기4293년3월31일(목) 상오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제1차 회의록 통과
- 2. 보고사항

토의된 안건

- 1. 의원청가에 관한 건 7
- 2. 정부위원 임명승낙에 관한 건(내무 이동환) 7
- 3. 마산사건 조사승인에 관한 건 7
- 4. 휴회에 관한 건 7

(상오 10시35분 개의)

○**부의장 이재학**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중 좌석을 떠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사과장 제1차 회의록 낭독)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습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의사국장 이호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자로 헌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
 원회 구성에 관한 통지가 있습니다.

단기 4293년 3월 25일
 헌법위원회위원장 장면

민원의원장 귀하

헌법위원회 구성에 관한 통지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거 3월 23일
 에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
 여 토의한바 구성인원은 11인으로 하되 참의원에
 서 선출할 위원 2인은 민의원에서 가름하여 위원
 2인을 선출하기로 결의하였기 자이 통지하오니
 조량하심을 경망하나이다.

추이

본 위원회에 제청된 위헌여부제청사건의 심리
 기일을 내 4월 4일로 지정되었기 침신하나이다.

이 통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참고로
 공(供)하겠습니다.
 3월 28일 자로 민장식 의원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
 허하여 주심을 양망하나이다.

기

- 1. 이유, 교통사고로 골절치료차

1. 기간, 단기 4293년 자 3월 29일 31일간
 지 4월 28일

- 1. 연락처

단기 4293년 월 일
 민원의원장 민장식

민원의원장 이기봉 귀하

3월 17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으
 로부터 교섭단체 소속의원 추가등록에 관한 통지
 가 있습니다.

단기 4293년 3월 17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정문흠

민원의원장 귀하

교섭단체 소속의원 추가등록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단기 4293년 3월 22일 자료 좌기 의원을 본 교섭단체 소속의원으로 서명 날 인하여 추가등록하오니 접수하여 주심을 앙망하 나이다.

- 기
- 김장섭(영일을구)
- 이정희(영주군)
- 구철희(용인)
- 김규만(의성갑구)
- 박창화(밀양갑구)

3월 28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으 로부터 상임위원 배정 통지가 있습니다.

단기 4293년 3월 28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정문흠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통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당 소속인 상임위원회 위 원으로 좌기와 여히 배정하였아옵기 자이 통고하 나이다.

- 기
- 이정희(문교)
- 김장섭(법사)

3월 2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인사발령 통지 가 있습니다.

단기 4293년 3월 23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봉 귀하

정부인사발령 통지의 건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 기 알려 드리나이다.

- 기
- 국무위원 홍진기
- 내무부장관에 포함.
-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최인규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각통) 단기 4293년 3월 23일
대통령

3월 2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면에 관 한 통지가…… 임면 승낙 요청이 있습니다.

단기 4293년 3월 28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봉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내무부장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내무부차관 리 성우를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 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 기
- 내무부차관 리동환
- 정부위원에 임함.

3월 29일 자로 변진갑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외국연초흡용제한법안, 면화장려법안, 임산연료사 용제한법안, 산림보호법안, 수도종자갱신법안 이 다섯 개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외국연초흡용제한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 부하고 그 외의 4개 법률안은 농림위원회에 회부 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습니다.

외국연초흡용제한법안

본문, 외국연초흡용제한법안 별지와 여히 제안 한다.

이유, 구진(口陳)

4293년 3월 29일
제안자 변진갑
조종호 윤용구 김정근
김두진 황숙현 윤병구
김병순 김원중 강종무
김 삭

외국연초흡용제한법안

변진갑 의원 외 10인

제1조 민국의 국민은 민국의 영역 내에서 외국 산 제조연초를 흡용 또는 흡용이나 영리의 목적 으로 소지하지 못한다. 단, 주무관청의 허가 있는 연초는 예외로 한다.

제2조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외국산 제조연초를 흡용하거나 흡용할 목 적으로 소지한 자는 5000환 이하의 벌금 또 는 7일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
2. 영리의 목적으로 외국산 제조연초를 소지 또는 판매한 자는 3월 이하의 징역이나 5 만 환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

한다.

제3조 본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한 날부터 시행한다.

면화장려법안

본문, 면화장려법안을 별지와 여히 제출한다.
이유, 구진

4293년 3월 29일

제안자 변진갑

조종호 윤용구 김정근

김두진 황숙현 윤병구

김병순 김원중 강중무

김 삭

면화장려법(안)

변진갑 의원 외 10인

제1조 본 법은 면화의 생산을 장려하고 외국면화의 사용을 제한하여 국민의료(國民衣料)의 자급자족과 농촌경제의 발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는 면화의 품종개량 및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 및 채종사업을 행한다.

제3조 정부는 면화의 재배, 경운, 채면 등 방법의 개량 지도를 위하여 지도원의 설치, 전시포의 경영,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행한다.

제4조 정부는 전조의 사업을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농업협동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신간지에 면화를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정부는 면화의 대면적 집단경작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면화를 경작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 법 시행 후 5년간 임시토지수득세 또는 지세를 면세한다. 단, 계속 면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국내에서 생산된 면화는 농림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직업자가 이것을 매수한다.

제9조 농림부장관은 매년 2월 이내에 당년산 면화의 매수에 적용할 가격을 결정하여 이것을 공고한다.

전항의 가격은 면화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고 일반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이것을 결정한다.

전 2항에 의하여 결정 공고된 가격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등 비상사유로 인하여 면화가 현저히 감수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변경증액할 수 있다.

제10조 농림부장관은 매년 9월 중에 방직업자에 대하여 업자별 원료면 소요량을 참작하여 당년산 내국면화의 매수예정을 배정 통고한다.

제11조 방직업자는 농림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의 생산능력 및 연간 원료면 소요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방직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화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정부는 외국면화 도입용 외화의 배정중지, 기타 외국면화 도입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농림부에 면화가격심의회를 둔다.

면화가격심의회는 면화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면화가격심의회는 면화의 개량 증산 및 생산비저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 면화가격심의회는 농림부장관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위원은 면작업자, 방직업자, 기타 면작업에 관하여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다.

농림부장관은 면화가격심의회 의장이 된다.

제15조 본 법은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방직업자에 이것을 적용한다.

제16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7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유

아국에서는 상고로부터 면화를 경작하여 왔으나 지금으로부터 20년 전경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면화생산량이 실로 2억 근을 초과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제 4270년 전후 수년간의 면화생산량을 살펴보면(실면)

연대	육지면	재래면	합계근
단기 4268년 서기 1935년	1억 6994만 8818 근	4380만 149 근	2억 1374만 8967

연대	육지면	채래면	합계근
" 4270년 " 1937년	2억 42만 292	3986만 8172	2억 4028만 8464
" 4272년 " 1939년	1억 9962만 232	460만 7436	2억 422만 7668
" 4273년 " 1940년	2억 1027만 9107	377만 3743	2억 1405만 2850

이 중에서 최고량의 수확이 있었던 4270년의 각 도별 생산량을 살펴보면(합북 생산 무)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1178만 6677	1234만 3962	1919만 7516	1380만 2233	7080만 7693	2947만 5447	4030만 5840	2억 4028만 8464
						황해	2120만 979
						평남	1264만 1234
						평북	447만 2839
						강원	423만 6285
						함남	1만 7759
합계 2억 4028만 8464							

이 중에서 남한 팔도의 분만을 살펴보면 실로 2억 200여만 근의 생산이 있고 평년생산이 적어도 1억 8000만 근 내외로서 농가 또는 지방민의 자가용 오륙천만 근을 제하고 1억 2000만 근 내외가 각 공장에 공급되었으며 그 대금수입이 농촌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해방이 있는 후 10유여 년의 금일에 이르러 면작의 발전은 커녕 도리어 비참한 정도로 쇠퇴하여 현재의 면화생산량은 실로 지방민의 자가용에도 부족할 정도이며 공장용 원료로는 전연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한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 (1) 500 대 1 환율에 의한 저렴한 외면을 대량 도입하여 내국면화의 가격을 극도로 억압하고,
- (2) 소위 외국의 구호물자, 군용피복류, 기타 외래 면제품이 시중에 범람하고,
- (3) 면화의 개량, 증산 또는 생산비의 저감을 위한 관의 지도장려는 전연 고려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국내의 각 공장에서는 매년 다량의 외면을 도입 사용하여 연간 3000여만 불을 산(算)하는 외화를 유출시키고, 그 반면 연산 300억 환에 달하는 농업생산을 멸살시킨 것이다. 진실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제 국내 각 공장에서 소요되는 원료면의 전량 2억 근을 단시일 내에 완전공급하기는 곤란하다 할지라도 우선 그의 반분에 불과한 1억 근만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은 실로 200억 환의

거액에 달하는 것이다.

본 사업을 완수함에는

(1) 각 방직공장의 원료면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구하고 내국면이 부족한 때에 한하여 외국면의 도입을 용인할 것.

(2) 면화의 품종의 개량, 단위수확량의 증가 및 생산비의 저감 등에 대하여 과감한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법을 제안한 것인데 본 법이 실시된 후에 관민이 일치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육력 매진할 것은 물론이어나와 각 방직업 관계인사들도 본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국가와 민족산업의 복흥(復興)을 위하여 절대한 희생적 각오와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임산연료사용제한법안

본문, 임산연료사용제한법안을 별지와 여히 제출한다.

이유, 구진
부대건의안
별지와 여함.

4293년 3월 29일

제안자 변진갑
조종호 윤용구 김정근
김두진 황숙현 윤병구
김병순 김원중 강중무
김 석

임산연료사용제한법(안)

변진갑 의원 외 10인
제1조(목적) 본 법은 일정한 지역 또는 일정한

기관에서의 임산연료 사용을 제한하여 산림의 보호에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연료사용제한을 받을 지역 기관 및 용도)

다음의 지역 또는 기관에 있어서는 난방, 취사, 공업, 옥탕 등에 목탄, 톱밥, 기타 폐물이용 이외의 임산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단, 필요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1. 지역, 서울특별시 및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시
- 2. 기관, 공무소 학교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 또는 업체

제3조(벌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상습범인 때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시행기일)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임산연료사용제한법 시행에 관한 건의
임산연료사용제한법을 시행함에 당하여는 다음 각호의 시책을 철저히 하여 소기의 목적 완수에 자(資)케 할 것.

- 1. 정부는 임산연료 사용제한을 받을 연료수요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시책할 것.
 - 가. 대용연료의 공급원활과 가격저하에 대하여 특단의 시책을 강구 실시할 것.
 - 나. 연와, 용기 등 요업공장에 대하여는 설비의 개조에 필요한 자금을 최단시일에 특별융자 할 것.
- 2. 본 법 시행구역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여관업, 요식업 등에 대하여는 본 법의 취지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것.
 - 우 건의함.

산림보호법(안)

본문, 별지 첨부
이유, 구진
우 제안함.

단기 4293년 3월 29일
제안자 변진갑
윤병구 김병순 황숙현
김원중 강종무 김 식
윤용구 김창동 김철안
안덕기

산림보호법 입안의 요지

1. 산림의 보호에 관하여 긴급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속한 시일 내에 산림보호의 완벽을 기(期)코저 한다.

2. 임정상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동리의 구역에 종하여 산림보호구를 설정하고 산하 주민으로 하여금 보호구 내의 산림보호와 조림을 담당케 한다.

산하 주민은 산림의 화재·도벌·침간·해수충 등 산림피해의 방지 및 치수보육에 대하여 연대로써 책임을 진다.

3. 보호구 내의 주민은 애림계를 조직하고 관의 지시에 종하여 산림의 보호 또는 조림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4. 보안림 이외의 사유임야에 있어서는 임목의 채벌 및 임지의 이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여서 남벌방지 및 국토보안에 기여케 한다. 단, 녹비용의 가랍, 연료용의 낙엽 수근 등 채취 또는 가축사료, 기타 농기기, 특수공예품의 생산에 필요한 특수임목의 벌채는 이것을 제한치 않기로 한다.

.....

산림보호법(안)

제1조(목적) 본 법은 산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보호와 국토보안의 완벽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보호구) 지방장관은 행정상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동리의 경계 또는 적당한 구역을 구획하여 산림보호구를 정하고 산하 주민으로 하여금 당해 보호구 내의 산림의 보호 및 조림을 담당케 할 수 있다.

제3조(산하 주민의 책임) 산하 주민은 당해 보호구 내의 산림의 보호에 대하여 연대로써 좌의 책임에 임한다.

- 1. 화재의 방지
- 2. 도벌, 침간, 기타 가해행위의 방지
- 3. 유해동물의 가해방지 및 구제(驅除)
- 4. 치수의 보육

제4조(애림계) 산림보호구 내의 산하 주민은 전 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애림계를 조직한다.

애림계의 경비는 국고, 지방공공단체의 보조금, 조성금, 기타 수입으로써 지변한다. 애림계는 산하 주민, 산림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계비, 사업비, 위약금, 과태금, 기타 명의의 여하에 불

구하고 금품을 부과하지 못한다.

애립계의 사무는 당해 동리장이 이것을 담당하고 장부를 비치하여 계의 경비, 기타 금품 또는 노력 등의 출납을 정리한다.

제5조(보호 및 조림사업의 위탁명령) 지방장관은 미립목지 또는 산생지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산림의 보호 또는 조림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보호 또는 조림사업을 당해 산림보호구의 애립계에 위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위탁림의 수익처분) 전조에 의한 위탁보호 또는 조림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생하는 수익은 당해 애립계의 수입으로 한다.

단, 주벌 및 간벌에서 생하는 수익은 좌의 각호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이것을 교부한다.

1. 수탁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수익의 10분의 3을 교부한다.
2. 수탁지의 보호 또는 조림을 담당한 산하 주민에 대하여는 수익의 10분의 5 이내를 교부할 수 있다.

전항 단서 각호에 의한 수익의 교부방법, 시기, 기타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7조(사유임야에 대한 제한) 보안림 이외의 사유임야에서 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고래의 관습에 의하여 행하고 있는 녹비용가람, 연료용 낙엽, 수근의 채취 또는 가축사료, 기타 농기기, 특수공예품의 생산의 필요한 특수재목의 벌채는 이것을 예외로 한다.

1. 임목의 보육작업 이외의 벌채. 단, 임적 2입방미 이하의 자가용 벌채를 예외로 한다.
2. 경사 20도 이상의 임야의 개간 및 농용임지 또는 목장의 설정

면적 5정보 이상의 임야 또는 일반판매용 임목의 벌채, 면적 1정보 이상의 임야의 개간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할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작업실시의 신고) 임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작업실시 10일 이전에 소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임목의 보육을 위한 간벌 또는 임적 2입방미 이하의 자가용 벌채
2. 경사 20도 미만의 임야의 개간

제9조(벌칙)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월 이하의 징역이나 3만 환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책임을 태만하거나 또는 이를 방해한 자
2. 제5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7조의 각호에 위반한 자

제10조(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1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2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4조 종래의 산림계의 재산 및 채권채무는 본 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본 법에 의하여 조직된 애립계가 이것을 계승한다.

수도종자갱신법안

본문, 수도종자갱신법안을 별지와 여히 제출하나다.

이유, 구두

4293년 3월 29일

제안자 변진갑
 조종호 윤용구 김정근
 김두진 황숙현 윤병구
 김병순 김원중 강종무
 김 식

(제32회 제35호 부록참조)

3월 29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과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용 의원으로부터 마산사건 조사승인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단기 4293년 3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상용

민의원의장 귀하

마산사건 조사승인에 관한 건

표기의 건 사태수습의 긴급성에 감하여 휴회중 내무·법제사법 양 위원으로서 좌기와 여히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기 자이 승인을 요청하나다.

기

출장의원, 박홍규 류순식 이은태 황성수 손영

수 윤명운 정중섭 김선태 이병하
출장지, 경상남도 부산시, 마산시
출장목적, 마산사건 현지조사차

출장기간, 단기 4293년 3월 23일 5일간
3월 27일

3월 29일 자로 박홍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휴회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휴회긴급동의

주문,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휴회를 동의함.

이유, 구두설명

3월 29일
제안자 박홍규
현오봉 정문흠 김주묵
홍승엽 김두진 김의준
김익기 손영수 이성주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상오 10시51분)

○부의장 이재학 그러면 보고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청가원을 제출했습니다.

민장식 의원으로부터 3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31일간 청가를…… 청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승인합니다.

—정부위원 임명승낙에 관한 건(내무 이동환)—

(상오 10시52분)

○부의장 이재학 그다음에 정부위원 변경통지가 있습니다.

내무차관 이동환을 새로이 정부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승인합니다.

—마산사건 조사승인에 관한 건—

(상오 10시53분)

○부의장 이재학 그다음에 마산사건 조사승인에 관해서 법제사법위원장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양 위원회의 요청의 내용은 보고사항에서 여러분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대로 승인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승인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상오 10시54분)

○부의장 이재학 그다음에 휴회동의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가 됩니다. 아흐레 동안 휴회하자는 동의입니다.

박홍규 의원 외 아홉 명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5일까지 해요」 하는 이 있음)

일응 제출대로 하지요? 4월 9일까지…… 내일부터 4월 9일까지 아흐레 동안……

(「15일까지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조용하세요. 만일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동의를 묻겠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 116인, 가에 114표, 부에 없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 10일 날은 일요일입니다.

11일 날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상오 10시57분 산회)